서울시설공단

상수도 공사감독 단계별 이행사항 체크리스트(12월)

◆ 해당되는 업무 단계별 이행사항에 표시*(비고 : 미준수 또는 해당사항 없을 경우 반드시 내용 기재)*

○ 공 사 명 : 삼선시장입구~성북3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

구 분	업무내용	준수사항	준수	미준수	해당없음	비고
공사착공	사전 설계도서 검토	계약심사 전 설계참여 이행 *팀장전결	■	□	□	
	공사감독자 지정	이력제 확인(ETIS연동) *팀장전결	■	□	□	
	착수전 설계도서 검토 보고회 개최	수탁 후 2주 이내 개최 *처장전결 (부득이한 경우 실착공 7일 전까지)	■	□	□	
	감독업무 착수신고	공사 2건 이상 감독시 공사건별 감독업무 계획서 제출	■	□	□	
	착공신고서 검토보고	공사 예정공정표, 계약서 사본,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등 검토·확인(7일이내) *처장전결	■	□	□	
	직접시공계획서 검토보고	도급자 직접시공 비율, 직접시공계획서 통보일 기한 검토·보고서 작성 *팀장전결	□	□	■	전문건설을 도급받은 경우
	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	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-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-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여부 - 하도급률 적정성 등 검토 *처장전결	□	□	■	
	품질관리(시험)계획서 검토	7일이내 검토 보고 후 발주청 승인요청 *팀장전결	■	□	□	
공사시공(1)	시공계획서 검토 승인	7일이내 승인 여부 *팀장전결	■	□	□	
		최초위험성평가서 제출 여부 확인	■	□	□	
	검측계획 수립	공종별 검측계획 수립 여부 (업무지침서 별표1 참고) *팀장전결	■	□	□	
	수시위험성 평가	시공사 자율방식(매일1회) *팀장전결	□	□	□	
		공사감독 지원방식(매주1회) *팀장전결	■	□	□	
	품질시험 이행확인	해당 월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접수 후 검토보고(업무지침서 별지 제18호 서식) *팀장전결	□	□	■	
	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 검토	매월 5일 시공사 공문 접수 *팀장전결	■	□	□	
		매분기 15일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-「설계오류 최소화 추진계획」 참조 *팀장전결	□	□	■	
	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	7일이내 승인여부 *팀장전결	■	□	□	
	매몰부분 검사기록	- 감독일지에 검측내용 상세기록 - 사진촬영 및 검측대장 현장관리 (→준공시 제출·확인)	■	□	□	밴드 게시
	감독일지 작성	육하원칙에 따라 근무시간별 행정업무 및 구두지시 사항·검측내용 기록 (매일작성) ※첨부: 수시위험성평가서(교통안전시설 포함) *팀장전결	■	□	□	

서울시설공단

상수도 공사감독 단계별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(12월)

구 분	업무내용	준수사항	준수	미준수	해당없음	비고
공사시공(2)	현장실정보고	도급액 1억원 이상 증감 *본부장전결	☐	☐	■	
		중요한 공법변경 또는 (세부)공종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증감 *처장전결	☐	☐	■	
		5천만원 미만 공사구간내 경미한 사항 *팀장전결	■	☐	☐	
		승인요청 기한 일반사항 - 3일이내 검토, 승인요청	■	☐	☐	
		승인요청 기한 구조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 - 7일이내 검토, 승인요청	☐	☐	■	
	〈설계변경심의 개최전〉 -본부,자체 공통- 설계변경도서 작성·보고	- 수량 확인 후 감독자 직접 작성 여부	■	☐	☐	
		- 사전심사자 현장방문 후 시공수량 확인	■	☐	☐	
		- 설계변경내역서 사전심사자 및 팀장 확인(서명) 여부	■	☐	☐	
	〈설계변경심의위원회〉 -본부심의- (공종별 3천만원 또는 도급비 10%이상 증액)	도급액 3억이상 증액(위원장:시설안전본부장) *처장전결	☐	☐	■	
		도급액 3억미만 증액 (위원장:공사감독1처장) ※필요시 공사감독2·3처장지정 *처장전결	■	☐	☐	
	〈설계변경심의위원회〉 -자체심의-	본부심의제외공사 최종 설계변경시 *처장전결	☐	☐	■	
	〈설계변경심의 개최후〉 설계변경도서 작성·보고	심의위원회 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*처장전결	■	☐	☐	
	기성부분 검사서 보고	기성검사원 접수 후 7일이내 *팀장전결	☐	☐	■	
		- 검사자 타부서(팀, 그룹)직원 지정 - 검사자 현장방문 후 시공수량 확인여부	☐	☐	■	
		기성검사 지적사항 조치여부	☐	☐	■	
	준공기한 연기원	준공기한 연기 적정성 검토보고 후 발주청 승인요청 *처장전결	■	☐	☐	
공사준공	예비 준공검사	예비준공검사 계획 수립·실시 *팀장전결 -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공정 95% 내외 - 총공사비 5억원 이상, 주요 구조물 공사 - 외부전문가 합동점검(총공사비 10억원 이상)	☐	☐	■	
		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여부	☐	☐	■	
	준공검사	준공검사원 접수 후 14일이내 *처장전결	■	☐	☐	
		준공검사자 지정 적정성 - 준공금액 3억 미만 : 과장이하 2명 - 준공금액 3억~20억미만 : 팀장포함 2명 - 준공금액 20억이상 : 처장포함 3명 - 현장방문 후 시공수량 확인여부 - 타부서(팀) 직원 지정여부 ※부득이한 경우 팀내 직원(타그룹) 지정	■	☐	☐	
		준공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	■	☐	☐	
	기존관 처리	불용(기존)관 분기점 철거 및 폐쇄보고 •불용(기존)관은 전량 철거하여야 한다. 다만 철거가 불가능 할 시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구간별로 보고한다. *팀장전결	■	☐	☐	
	현장문서 인계·인수	공사준공 후 14일이내 발주청에 인계·인수 *팀장전결	■	☐	☐	

작성자 공사감독2처 상수도2팀 최호진

확인자 공사감독2처 상수도2팀 제삼차